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02 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 박대수 · 구자근 · 윤영석

김태호 · 정경희 · 김석기

지성호・정찬민・이 용

홍준표 · 김성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전기·전자제품을 무상(無償)으로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동 회수 및 인계·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수리·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·폐전 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(有償)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폐전기·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수 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판매

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

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, 전기 · 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

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.

- 1의2. 제15조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 또는 공제조합이 아닌 자에게 판매한 자
- 1의3. 제1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의2. 제15조에 따른 전기·전</u>
	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
	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
	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
	를 받은 자가 아닌 자 또는
	공제조합이 아닌 자에게 판
	<u>매한 자</u>
<u><신 설></u>	1의3. 제16조의4제3항 전단에
	<u>따른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</u>
	<u>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</u>
	아니하거나 환경부렁으로 정
	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
	고 판매한 자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	<u><</u> 삭 제>

·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~ 6. (생 략)

⑤ (생 략)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